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83호

건설신기술 지정

‘출입구 유입 미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Counter Flow 기류 활용 에어샤워 시스템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1)	법인명(성명)	삼성물산(주)(오세철)		
	주 소	우05288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6길 26(상일동, 글로벌엔지니어링센터)		
	전화번호	02-2145-6663	팩스번호	02-2145-5878
신청인(2)	법인명(성명)	(주)신성이엔지(이지선)		
	주 소	우13840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길 20(갈현동, 과천 스마트케이업무시설) A타워 14-15층		
	전화번호	02-6312-1000	팩스번호	02-6312-1018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988호
- 명 칭 : 출입구 유입 미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Counter Flow 기류 활용 에어샤워 시스템 기술
- 기술분야 : 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기타 환경기계설비
-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흡입구로 유입되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유해가스 등을 고효율 복합 필터 및 UV LED 모듈을 통해 제거하며 오염물질이 제거된 청정 공기를 고성능 팬을 통해 공급하고 상하로 움직이는 회오리 형태의 노즐과 좌우로 움직이는 회동 노즐을 이용하여 출입구 반대 방향으로 Counter Flow 기류를 형성시켜 출입자의 옷이나 신체에 부착된 미세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실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에어샤워시스템 기술이다
- 신기술의 범위
인체감지센서, 팬, 3중 복합필터, 이온나이저, UV LED 모듈, 회오리 노즐, 회동 노즐 등이 내장된 분리형 Bar 타입의 모듈을 건축물 출입구의 좌,우측에 설치하여 출입자에 의해 유입된 미세먼지, 오염물질을 여과 및 살균하여 청정공기를 공급하고 출입구 반대방향으로 Counter Flow 기류를 형성시켜 출입자의 옷 등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외부 오염물질의 실내유입을 차단하는 기술로서 원격통신으로 중앙제어 및 스마트제어 시퀀스에 의해 자동 운전되는 에어샤워 시스템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 해당 없음

5. 기 타

○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